

---

- 201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-  
**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**

---

2014년 4월 22일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박상수

- 201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-  
**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**

**안 건 명**

-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(건설교통국)

**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- 2014년 04월 11일(금), 마포구청장

**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**

- 2014년 04월 16일(수)

**위원회 회부근거**

-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

**관련법규**

- 지방자치법(법률 제10739호) 제130조
- 지방재정법(법률 제10991호) 제45조

## 1. 예산 규모 [총괄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당초 예산액	최종 예산액 (간주처리 포함)	추경재원 증(△)감	추경후 예산액	비고
합 계	432,264,798	434,488,197	2,942,271	437,430,468	
일 반 회 계	366,237,127	368,460,526	2,942,271	371,402,797	
지 방 세	78,227,748	78,227,748	0	78,227,748	
세 외 수 입	41,907,071	41,907,071	0	41,907,071	
지방교부세	3,950,000	3,950,000	0	3,950,000	
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	60,579,547	60,579,547	0	60,579,547	
보 조 금	145,708,872	147,932,271	94,971	148,027,242	
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	35,863,889	35,863,889	2,847,300	38,711,189	
특 별 회 계	66,027,671	66,027,671	0	66,027,671	
의료보호기금	411,526	411,526	0	411,526	
주 차 장	58,641,000	58,641,000	0	58,641,000	
마포농수산물 시장	6,975,145	6,975,145	0	6,975,145	

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도 가결산시 예상되는 잉여재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복지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기정예산액 434,488,197천원 대비 2,942,271천원이 증가한 437,430,468천원을 편성하였음

## 2. 건설교통국 예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비고
합 계	75,059,912	75,017,135	42,777	
일반회계	16,418,912	16,376,135	42,777	
특별회계	58,641,000	58,641,000	0	

### 가) 부서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	기정액		증감	
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건설교통국	75,059,912	100%	75,017,135	100%	42,777	0.1%
교통행정과	35,512,362	47.3%	35,512,362	47.3%		
교통지도과	24,038,696	32.0%	24,038,696	32.0%		
건설관리과	326,396	0.4%	326,396	0.4%		
토 목 과	8,858,159	11.8%	8,815,382	11.8%	42,777	0.5%
치 수 과	6,042,711	8.1%	6,042,711	8.1%		
지 적 과	281,588	0.4%	281,588	0.4%		

### 나) 세출 예산 사업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액	기정액	증감
토목과	연남동 361-32~375-103간 도로개설공사 (토지보상)	42,777	0	42,777

## 3. 검토의견

-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2,642천원, 시비보조금 42,329천원, 순세계잉여금 2,847,300천원이며, 주요 세출예산은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2,000,000천원,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 500,000천원,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100,000천원 등임
-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5,017,135천원 대비 42,777천원이 증가한 75,059,912천원이며, 증가 사유는 현재 사업 추진중인 연남동 361-32~375-103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토지, 건물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당초 예상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여 편성한 것임

- 동 사업은 연남로와 연남동 375번지 일대 단절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로 지역주민의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 도모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편성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여지나, 향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로 예산의 부족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.